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6. 4. 20
제안자 : 최광렬의원외 6인

1. 제안이유

「공직선거법」 제23조 및 「부산광역시 자치구·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·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의원정수가 16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(안 제2조제3호)
- 나. 비례대표의원은 다른 상임위원으로 배정(안 제4조 “제4항” 신설)

3. 관계법령

- 가. 공직선거법 제23조
- 나. 부산광역시 자치구·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·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호중 “8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

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비례대표의원은 서로 다른 위원이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.</p> <p>1 ~ 2. (생 략)</p> <p>3. 사회도시위원회 8명</p> <p>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① ~ ③ (생략) (신 설)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.</p> <p>1 ~ 2. (생 략)</p> <p>3. 사회도시위원회 7명</p> <p>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비례대표의원은 서로 다른 위원이 된다.</p>